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종교단체 대표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3.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u>23시 운영시간 제한</u> ○ 대상시설(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u>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01시로 연장</u>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가능 (현재 6인)

3. 해당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주시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김해강

행정사무관

대결 2022.3.4.

차혜란

협조자

시행 종무1담당관-714

(2022. 3. 4.)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

/ <http://mcst.go.kr>

전화번호 044-203-2328

팩스번호 044-203-3462

/ mostovoi10@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